

臺灣 노인복지정책의 현황과 과제

林 春 植

(한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chsrim@hanmail.net)



I. 서 론

최근에 이르러 臺灣은 각종 과학기술의 발달과 의약·보건·기술의 향상 등으로 인하여 생활수준이 급격히 향상됨에 따라 평균 수명이 점진적으로 연장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1970년 2.9%, 1980년 4.3%, 1990년 6.2%, 2010 10.7% 그리고 1993년 9월에는 7%, 2008년에 10.43%로 이러한 속도라면 2018년에는 14%, 2026년에는 무려 20%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노인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노인 부양부담이 커져, 2010년 노인부양비는 14.38%로 생산 연령 인구 7명이 1명의 노인을, 2025년에는 21.1%로 5명이 1명을 부양하는 상황에 직면하

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社政年報, 2012 : 57). 따라서 노인의 부양을 가족에게만 맡길 수 없으며 적절한 가족과 사회의 역할 분담으로 그에 기초한 사회적 보호체계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老人福祉 서비스 대책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산업·정보화 사회에서 은퇴한 노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장기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들은 누구로부터 어떻게 보호를 받을 것인가’, ‘전통적인 가족부양 기능이 쇠퇴하는 상황에서 누가 부양 기능을 대신해 줄 것인가’, ‘국가 사회에 의한 노인 부양부담이 증대할 때 경제 성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염려하여 老人福祉政策은 계속 뒤로 미뤄지지 福祉 등 수많은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다.

최근에는 低出產·高齡化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과제로 경제적 안정, 건강유지, 생활보호를 3대 老人福祉政策을 축으로 하여 ① 노인보호 서비스 강화 방안 ② 보호서비스 복지 및 산업발전 방안 ③ 노인 주택건설 민간 참여 방안 ④ 노인장기보호 제도 구축, ⑤ 지역사회 보호 거점 구축, 老人福祉시설 보호 서비스의 질적 향상, 노인 교육, 여가, 휴양 서비스 실질적 계획 등을 추진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모든 노인들이 앓아서 적합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계획 하에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문가들로 구성된「老人福利推進委員會」(Committee on Promoting welfare of Senior citizens)를 구성하여 계획적인 老人福祉 정책을 수립해 나가고 있다.

臺灣의 老人福祉는 건국 이래 오늘에 이르기 까지 가정에서 자녀로부터 부양보호를 받고 있는 노인을 포함한 중저소득 노인(Senior Citizens of Semi-low income), 저소득 노인(Lower Income Aged), 무의탁 노인(Taking Care of Senior Citizens)을 위한 공적 부조(Public Assistance) 측면에서 노인들을 보호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고 老人福祉 정책의 일반적인 근간은 동양적 가정보호와 사회보장의 바탕 위에 서구식 사회보장 제도를 이식한 절충식 모형을 채택해 나가고 있다.

최근 들어 臺灣 사회도 고령화 사회의 도래로 이에 대비한 老人福祉政策 수립의 기본방향과 현행의 老人福祉 서비스의 확대, 향후 추진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에 대한 재평가와 이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노인, 가족, 지역사회, 사회단체,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가 상호 인식을 형성해 나가고 있다.

II. 노인복지의 사회, 환경적 요인

1. 老人福祉의 政治的 要因

중국의 사회복지는 고대의 仁情의 전통문화와 삼민주의, 민생주의의 철학과 사상에 근거를 둔 대동 사회를 건설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중국에는 고대로부터 국가의 재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倉이란 제도를 두고 국민을 다스리는 정책이 있었다. 이는 漢朝의 常平倉이나 朝의 義倉과 社倉이 이에 해당 되는데 이는 사회복지의 철학이념과 동일한 것이다. 그러나 이보다는 훨씬 더 이전의 周公이나 先秦의 齊家百家에 이르기 까지 사회복지 사상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근세에 이르러 중국의 國父인 孫文 선생은 중국 고유의 정치사상을 계승하고 서구의 사회정책을 도입하여 1911년에 三民主義(The Three Principle of Livelihood)를 제정 · 공포했는데 이는 경제개발과 사회개발의 균형적 발전에 의한 균부사회 건설에 그 초점을 두고 있다. 즉 국가 발전 최대 목표는 국민생활을 위함에 두고, 사회의 생존, 국민의 생계, 군중의 생명 등의 균부 · 안정 · 이익을 추진해 왔다.

蔣介石 (1887~1975) 대통령은 사회복지 정책의 핵심인 삼민주의 사회복지를 중시하고 흙아비 · 과부 흙아비 · 心身障礙人 · 농민 · 일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그들의 곤란한 점이나 생활 상태 등을 잘 이해하여 그들을 적극 돋는 데에 그 목표를 두었다. 이에 따라 民生主義 育樂兩編補述, (1931)을 저술하여 아동 · 흙아비 · 과부 · 노인 · 葬禮問題 등에 대해 명확한 언급 한 이후 老人福祉 서비스의 경지를 마련한 계기가 되었다.

즉, 臺灣老人福祉는 고대 先賢들로부터 근세의 지도자 孫文 선생을 비롯한 역대의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親民思想과 유교사상, 그리고 三民主義, 민생주의에 입각한 체계적인 老人福祉政策을 시행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위기가 아닌 새로운 변화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확충해 나가고 있다. 또한 고령화가 경제전반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노동시장과 보건 · 의료복지서비스, 사회 · 정치 · 문화적 변화에 미치는 영향, 고령 사회의 환경 변화 등이 老人福祉 서비스의 쟁점이 되고 있다.

2. 立法과 行政體系

臺灣의 사회복지정책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비교 할 수 없을 정도로 사회복지를 기본 국책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도 국회와 행정 기관의 상호협력 체제하에 집권당인 國民

黨의 정당 강령과 더불어 제반 老人福祉 관련 법령이 마련되었다. 이러한 법령을 크게 두 종류 대별하여 설명할 수 있는데, 첫째, 노동관련법령으로 노동보험조례(1958), 노동안정위생법(1974), 직업훈련법(1983), 노동기준법(1984), 그리고 탄광안정법(1973) 및 종업원복지기금조례(1943) 등이 있으며, 둘째, 사회복지법령·복지서비스 그리고 아동복지법(1973), 老人福利法(1980), 청소년복지법(1984), 심신장애자권익보장법(1980), 사회구조법(1980), 全民健康保險法(2004), 국민연금법(2007) 등이 있다. 그 밖에 사회복지정책 강령(2004), 가정정책(2004) 등이 제정·공포되어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 연계적인 사회복지 서비스의 입법·행정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1980년에 老人福利法(Senior citizens welfare law)을 입법한 이후 1997년에 1차 수정·보완하였으며, 고령화 사회에 나타나는 제반 문제를 선 예방하기 위하여 2007년에 재수정·보완하여 노인 연령과 복지 조치 범위, 즉 노인 보조금, 연금, 주택보호, 요양보호 등 수요 계획 및 전문인력 활용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수정하였다.

그 밖에 그동안 실시하고 있는 老人福祉 분야의 주요 정책과 주요 법령·규정·지침 등을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하여 UN이나 國際協力開發機構(OECD)와 같은 국제기구에서 권고한 고령화 사회에 적합한 老人福祉 서비스 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老人福祉 관련 법령 및 규정·지침 등을 구체적으로 수립해 나가고 있다.

특히 정부에서는 2002년 3개년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고령화 프로젝트로 「노인보호 서비스 강화방안」을 채택한 이후 부터 ① 노인 생활보호 강화 ② 노인 심신건강 보호 ③ 노인 경제안정 보장 ④ 노인 사회참여 촉진 등을 세부 항목으로 나누어 9대 정책과제를 선정했는데, 세부 항목은 다음과 같다.

- 노인재가복지 서비스 강화
- 노인 사회안전망 시스템 구축 강화
- 생활환경 개선 및 거택보호 강화
- 보건 및 의료 보호 서비스 강화
- 노인생활시설 서비스 강화
- 보조금 및 지역 보험 확대 강화
- 노인보호 서비스 및 사회참여 강화
- 전문인력 훈련 강화
- 교육과 지도·감독 강화

이와 같이 선정된 9대 과제로 사회 환경의 변화 및 시대적 조류에 부응한 노인의 건강과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신세기의 老人福祉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한老人福祉 서비스를 추진해 왔지만, 2008년 民進黨 정권이 國民黨 신정부로 이양되면서 정책 방향이 변화하고 있다.

3. 社會福祉 行政 體系

사회복지 행정체계를 보면 1940년 국민당 정부가 臺灣 지역으로 옮기면서 행정원에 努工司와 社會司,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사회국과 사회과를 설치하여 사회복지 업무를 통합적으로 관장해 왔다.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서는 사회정책 및 그에 따른 업무가 날로 다양해지고 있어 복지행정조직의 개편이 불가피하여 行政院(The Executive Yuan)의 內政部(The Ministry of the Interior)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특히 老人福祉 업무는 社會司(Department of Social Affairs)에서 전담하고 있으며 별도로 권역별 특수 사업에 대해서는 직접 중앙정부에서 관장하고 있을 정도로 老人福祉 사업을 중시하고 있다.

老人福祉 주요 업무는 사회복지를 총괄하고 있는 중앙정부 조직인 사회 내의 노인 복지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老人福祉 행정은 老人福祉科에서 관장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현(縣), 시(市) 그리고 향(鄉), 진(鎮)의 행정단위에서는 공적 부조, 복지서비스, 老人福祉 등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1999년 7월에 老人福祉法 제5조에 의해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에 공히 老人福利推進委員會(Committee on Promoting Welfare of Senior Citizens)를 조직하여 각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는 老人福祉 관련 업무를 공동으로 협력하고 나아가 연구, 심의, 자문 및 老人福祉에 대한 종합 대책을 수립해 나가고 있다.

III. 인구 고령화의 사회학적 특성

臺灣은 최근 경제적 번영과 보건·의학·기술의 혁신적인 진보 등으로 인하여 인류의 수명이 보편적으로 연장되어 가고 있는 추세에 따라 노령인구(Aged Population)가 급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미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에 도달하게 되었다.

臺灣의 노년인구 연도별 변화 추이는 <표 1>와 <표 2>과 같이 출산율과 사망률의 감소로

인하여 평균수명이 연장되어 1960년에 62.2세였으나, 2010년에는 79.0세(남 76, 여 83)로 여성 노인이 증가하는 성비의 불균형을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전체 인구에 대한 노인인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져 생산 연령 인구 7명당 1명의 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또한 노인 부양에 따른 공사적 비용이 자녀부양보다 높아 실질적 부양비용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표 1〉 合計 出產率 및 平均壽命 推移

(단위 : %)

내 용	1960	1970	1980	1990	2000	2008	2010	2020
합계출산율	5.8	4.0	2.5	1.8	1.72	1.12	1.8	1.9
평균수명	62.2	68.4	72.1	73.6	76.5	78.38	78.9	80.0
남 자	62.2	66.2	69.6	71.1	73.7	75.46	75.9	77.0
여 자	62.2	70.5	74.5	76.1	79.3	81.76	82.0	82.9

* 자료: The Republic of China(2009), Introduction of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by Ministry of the Interior 내부 자료

결국 노인인구 증가라는 사회적 부담이 커짐에 따라 가족과 사회의 적절한 역할 분담으로 그에 기초한 사회적 보호체계 마련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표 2〉 65歲 以上 老人人口 現況

년도	총 인구(명)	65세 이상(명)	65세 이상 (%)	노화지수(%)	노인인구의뢰비(%)	부양비(%)
1992	20,802,622	1,416,133	6.81	26.41	10.10	48.32
1993	20,995,416	1,490,801	7.10	28.24	10.48	47.60
1994	21,177,874	1,562,356	7.38	30.22	10.82	46.60
1995	21,357,431	1,631,054	7.64	32.13	11.13	45.78
1996	21,525,433	1,691,608	7.86	33.95	11.39	44.94
1997	21,742,815	1,752,056	8.06	35.65	11.62	44.22
1998	21,928,591	1,810,231	8.26	37.59	11.83	43.30
1999	22,092,387	1,865,472	8.44	39.40	12.04	42.60
2000	22,276,672	1,921,308	8.62	40.85	12.27	42.32
2001	22,405,568	1,973,357	8.81	42.33	12.51	42.07
2002	22,520,776	2,031,300	9.02	44.17	12.78	41.72
2004	22,689,122	2,150,475	9.48	49.02	13.31	40.48
2005	22,770,383	2,216,804	9.74	52.02	13.60	39.74
2006	22,876,527	2,287,029	10.00	55.17	13.91	39.12
2007	23,037,031	2,343,092	10.21	58.13	14.13	38.43
2008	23,037,031	2,402,220	10.43	61.51	14.36	37.70
2009	23,121,523	2,411,890	10.63	61.11	14.31	35.1
2010	23,162,123	2,418,543	10.71	61.32	14.35	35.9

* 주: (1) 老化指數 = 65세 이상 \div 0~14세 \times 100, (2) 노년인구 依賴費 = 65세 이상 \div 15~64세 \times 100, (3) 부양비 = (0~14세 + 65세 이상) \div 15~64세 \times 100

* 자료: The Republic of China(2012), Introduction of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by Ministry of the Interior 내부 자료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표 2〉과 같이 1992년에는 6.81%였으나, 2000년에는 8.62% 그리고 2010년에는 10.71%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18년에는 14%, 그리고 2026

년에는 20%로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70세 이상의 후기 노인인구가 2000년 4.91%에서 2021년 7%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어 이러한 노인인구의 증가는 노인부양지수와 노령화 지수의 급격한 증가를 수반하고 있어 심각한 노인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근래에 이르러 노년인구의 자연증가율 이외에도, 약 1백50여만 명에 이르는 中國大陸(Chinese Mainland)에서 건너 온 중국 국민당 정부군과 난민들이었던 청장년들이 60여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는 거의 고령층이 되었기 때문에 정부 당국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경제적 문제와 아울러 사회적·심리적 압박이 내적 불안의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臺灣도 高齡化(Population aging)를 ‘위기’가 아닌 새로운 사회 변화의 ‘계기’로 마련하기 위해서는 고령화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노동시장과 보건, 의료, 복지서비스 정책과 사회, 문화적 변화에 미치는 영향 등의 고령사회(aged society)의 환경 변화가 노인 보건복지 정책의 쟁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고령사회에 대비한 老人福祉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에 고심하고 있다.

IV. 노인복지서비스 정책 분석

臺灣의 사회복지 제도의 특징은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이른 60년대 중반부터 산업화·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사회·경제 및 정치적인 특수한 요인이 함께 작용하여 사회보장이 각 직업별·기업별·지역별로 도입·전개되어 종합적인 체계를 지향해 왔다.

사회보험제도는 1950년에 제정·공포한 군인보험법과 노동자보험법을 시초로 하여 공무원보험법(1958), 그리고 1980년 공무원보험법에서 다시 독립되어 제정된 사립학교 교직원보험법과 학생·어민평안보험법(1975)이 있다. 이는 1965년에 채택된 민생주의 현 단계 사회정책이 시행되면서부터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복지 제도는 그간의 사회·경제적 발전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되고는 있지만 전민복지에는 아직 미흡한 실정에 있다. 현재 실시 중인 사회보험은 고령자들의 생활보호, 소득보장을 위한 것으로 노동자보험, 공무원보험, 군인보험, 교직원보험과 학생·漁民平安保險 등 4종인데 보험금 급여 방법은 현금 일시불과 연금 수급을 병행하고 있다. 보험업무의 주무부처로 교육부의 지도 감독 하에 제3금융기관인 중앙신탁국에서 관

장하고, 노동자보험은 내정부, 臺灣省 노동보험국에서 그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臺灣도 가족기능의 약화, 인구 구조의 변화의 따라 노인보호 문제에 고심하고 있으며 아울러 가족기능을 유지하거나 지역사회 자원과 서비스 지역화 조치를 마련하여 노인으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익숙한 지역사회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특히 건강문제나 자활능력을 상실한 노인, 무의탁노인을 위한 보호서비스, 재가복지서비스, 지역사회보호서비스, 시설보호 등 노인에게 선택권을 부여하여 노인의 존엄과 안정된 노후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노인에게 가능한 양질의 老人福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위생, 복지, 교통, 건설 및 노동 등 관련 행정기관은 공동으로 老人福祉를 추진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老人福祉 서비스 조치를 중심으로 그 내용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健康 維持

가. 재가 노인 건강보건 예방 서비스

老人福利法 제 20조에서는 「노인은 자율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노인건강 검진 및 보건서비스를 받는다. 단 서비스 항목은 중앙정부에서 정한다」로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들이 정기적으로 지정된 지역사회 내의 의료기관에서 매년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나. 中低所得 노인 의료 보조금

1995년 실시한 국민건강보험 이외에도 저소득(Low income)가족 진료시 진료비로 인한 가정 경제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하여 저소득 가족에 진료비를 보조하고 있다. 단, 70 세 이상 중저소득 노인(Senior Citizens of Semi-low income)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험비용 전액을 보조해 주고 있다.

다. 노인 의치 시술비 보조

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는 있으나 치과 의사의 진단 결과에 따라 노인들에게 틀니를 서비스로 제공해 주고 있는데, 臺北市에서는 시거주만 1년 이상 60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과 시설보호 노인에게 틀니 시술 비용을 보조해 주고 있는데, 5년 이내에는 재신청할 수 없다.

2. 經濟 安定

臺灣의 공적부조(Public Assistance)는 소극적인 면에 있어서는 생계가 곤란한 국민에게

적당한 부조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조해 주는 것이며, 적극적인 면에서는 노동의 잠재적 능력을 개발케 해 주어 생산 활동에의 참여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조력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노인소득보장은 아직까지 노인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있어 단편적, 개별적, 선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노인들에게 소득보장은 중앙정부의 보험국과 지방자치단체의 사회과에서 마련하고 있는 (1) 공무원보험과 노동보험에서 제공되는 퇴직금 (2) 무의탁노인과 무의탁 퇴역군인을 위한 시설보호 (3) 빈곤노인들을 위한 의료보호 서비스의 3가지 제도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그 밖에 老人福利法과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정부에서 제공하고 이를 민간단체에서 보조 지원하는 방식을 병행하고 있다.

공무원보험(1958)에서 적용되는 정년연령은 65세이며 노동보험 적용 대상자는 2004년 평균 정년연령이 60세 내외이며 대부분 퇴직자들은 연금 수급으로 노후생활을 유지하기에는 충분한 액수가 되지 못하고 있지만 공무원, 교직원의 경우에는 급여율이 100%로 국민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어 최근들어 시민단체 등의 연금개혁을 요구받고 있다.

그리고 특유한 중국인들의 노동에 대한 전통적 특성 때문에 건강이 허락하는 한 노인 스스로 일을 하고 있어 정부당국에서는 노인 일자리 마련 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가내수공업이 발달된 산업구조 때문에 지역사회 내에서 대자보을 통해 자연스럽게 일자리의 수요 공급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밖에 별도로 취업을 희망하는 노인들에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과에 신청하면 취업을 알선해 주고 있는데, 별도의 중하위계층 노인들을 위한 경제안정 대책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노인 생활급여

중하위층 노인의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하여 65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생활이 빈곤하거나 부양자가 없는 노인, 노인 생활보조 시설 서비스를 받지 않는 노인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경제적 지원을 제공한다.

2010년 중하위층 노인 생활급여 대상자는 가족의 총 소득을 가구원의 평균 소득에 따라

배분하며 최저생계비 표준의 1.5배 이하일 경우에는 1인당 월 TWD 8천원의 생활보조금으로 지급하고 1.5~2.5배 사이일 경우에는 1인당 월 TWD 5,000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수혜자는 총 16만여 명에 이르고 있다.

나. 노인 특별 보조금

老人福祉法 제 16조 제1항 노인의 생활보장에 관해서는 「생활보조금(Providing life allowance), 특별보호(providing special care-allowance), 보조금 경로연금 제도를 도입하여 점차적으로 확대 실시한다」. 그리고 동 시행세칙 제11조 제1항에서 지칭하는 특별보호보조금은 장기 만성질환으로 자립능력이 부족하고 전문적인 보호가 필요로 하는 저소득계층 노인을 위한 보조금을 가리킨다. 보조금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50%씩을 부담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수혜 노인은 만성질환으로 인해 자활능력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보호 또는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노인 그리고 경제적 빈곤으로 인하여 간병인을 둘 수 없는 중저소득층 노인들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정부는 중저소득 노인을 보호하는 가족에 대해 노인 부양으로 인한 정신적·경제적 손실을 보상해 주어 가족 기능을 유지 보완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다. 경로복지생활보조금 지원

경제적으로 빈곤한 65세 이상 노인의 안정된 생활유지를 위하여 중앙 정부에서는 노령연금제도 시행하기 전에 국가의 재정부담을 강화하여 사회공평 원칙에 따른 경로복지생활보조금 지원 문제를 해결하고 아울러 전민 국민연금 제도가 정착되기 전의 과도기적 조치 차원에서 2002년에 『경로복지생활보조 임시 조례』가 총통령령으로 공포되었다.

그 결과 노인들은 지방자치 단체의 사회과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는데, 2010년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평균 총 TWD 3,000원을 지급함으로서 경제력이 없는 노인들의 생활을 보조하고 노인들의 경제안정에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55~64세의 원주민 농민복지보조금 임시 규정(1995)에 의거 월 TWD 6,000원을 지급하고 있다.

3. 教育 및 餘暇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臺灣의 노년기 문제는 국민들의 건강생활의 충족과 평균수명의 연장은 65세 이상 노인들이 은퇴 후의 생활이 사회문제로 대두된다. 노년기의 여가시간은 평균수명의 연장과 더불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노년기의 문제는 경제적 빈곤, 건강 악화, 역

할 상실, 고독감, 무료함 등으로 요약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무의는 은퇴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노인들의 역할상실 또는 여가시간의 증가로 인한 무료함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냐는 것이 과제로 등장했다.

그래서 정부는 역할상실 또는 여가투성이이라는 상황으로 고통을 받는 노인들에 대해서 어떠한 프로그램과 시설을 제공할 것인가의 문제와 그리고 노인 스스로는 이러한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등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여가, 오락 서비스 시책에 관한 주요 프로그램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노인교육

노인교육의 목적은 현대에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노인들 자신이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를 교육활동을 통해서 노인들 스스로가 터득하도록 하는 데에 있다. 때와 장소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일상생활에서의 모든 것을 배우게 하는 그 매개체의 역할은 방법이나 선택 면에서 매우 중요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노인교육 시설은 長青學園(Senior Learning Centers Evergreen Institutes)이라고 할 수 있다.

長青學園의 주요 교육내용은 교양(동양화, 서예, 음악, 무용, 헬스 등), 언어학습(국어, 영어, 일어, 한국어 등), 상식(의료, 보건, 법률 등), 정보화(인터넷, 쇼핑몰, 게임, 워드 등)이며 중앙정부의 장청학원 보조 규정에 따라 1개 강좌에 20명 이상 노인을 모집하여 3개월 이상 개설한 클래스에 대해서는 과목당 월 TWD 7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과목당 연 보조금 상한액은 7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장청학원은 2010년 3백74개소에 1천6백여 강좌가 개설되어 5만여 명의 노인들이 참여하였다.

그 밖에 별도의 퇴직 대기자들의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은 민간단체에서 보조를 하고 있으며 주요 교육내용은 노후생활 계획과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사회보장 관련 법령 및 老人福祉 서비스 시책을 이해하고 심리적, 생리적 및 사회적 적응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다. 그리고 민간단체에서는 직무교육의 커리큘럼으로 채택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으며 아울러 노인 인력은행도 설치하여 노후생활에 적합한 취업직종 개발과 취업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나. 노인문화센터

노인들의 여가와 문화활동의 장이라 할 수 있는 노인문화센터 (Senior Recreational Centers)는 3백38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鄉·鎮·市(Village-Town-City-Level)에는 의무적

으로 1개소 이상 센터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다. 센터의 설립운영 지원은 2001년 중앙정부로부터 복지서비스 예산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어 자치적으로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도록 설립하여 2010년 3백28개소을 운영하고 있다.

주요 프로그램 내용은 노인여가 활동, 건강문화 활동, 문예 활동, 예술 활동, 기예 활동, 연수 및 친선 활동 등을 전개하는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老人福祉 서비스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센터를 재가복지 서비스, 노인 주간보호, 노인교실, 영양음식 서비스, 취업알선 집단 활동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지역사회의 거점 시설로 활용하고 있다.

다. 노인클럽

지역사회 노인들이 여가를 즐기며 인생의 황혼기를 활기차게 보낼 수 있는 일종의 老人福祉 여가시설로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노후건강유지, 소득활동, 기타 일상 생활과 관련한 친선활동의 장소로 2010년 전국의 3천3백99개소의 長春俱樂部(longevity clubs for senior citizens)라고 하는 노인클럽이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다.

또한 노인클럽에서는 노인들이 사회봉사활동을 통해 보람 있는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자원봉사대를 조직하여 노인들의 경험과 지혜를 사회에 공헌하고 있는데, 2010년 3천9백28개의 노인자원봉사대가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다.

라. 심리·사회적응 프로그램

노인의 사회적응능력을 증진시키고, 노인의 인권과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중앙정부에서 북부, 중부, 남부 3권역에 노인자문서비스센터를 설치하여 2005년 5월 『옛 친구 전화』(080-022-8585) 전화를 개통, 노인 심리, 의료보험, 위생보건, 환경적응, 인간관계, 복지서비스 알선 등에 대해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노인, 가족, 노인단체에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노인의 생활적응력 증진과 노인권익보장을 위해 노인생활시설과 일반가정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인인권침해에 예방을 위한 교육은 물론 침해사례가 발생했을 경우에 전문가들이 개입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자문해 주고 있다.

마. 경로우대 제도

노인들에게 대중교통, 공원과 오락시설, 문화교육시설을 이용 시에는 50%의 할인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보다 많은 야외 활동 참여기회를 권장하고 있으며 아울러, 노인 심신 건강에 유익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 단체에 따라서는 100%를 지원하고 있다. 무엇보다

도 이와 같은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 경로효친 미덕을 발휘하여 노인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고양해 나가고 있다.

그 밖에도 노인 교육과 여가 및 오락 활동 증진을 위하여 퇴직 후의 정보화 교육 확대, 사회활동 참여에의 기회 확대, 노인교육

臺灣의 老人福祉 서비스는 공적 · 사회부조에 의한 생활시설과 이용시설 그리고, 일반 재가노인을 위한 복지서비스로 대별할 수 있다.

학습 기회의 확대, 노인 복지활동의 조직 및 노인 복지운동 전개, 노인 사회체육 프로그램 강화, 노인문제 상담 프로그램 강화 등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4. 生活 保護

臺灣의 老人福祉 서비스는 공적 · 사회부조에 의한 생활시설과 이용시설 그리고, 일반 재가노인을 위한 복지서비스로 대별할 수 있으며, 현행 老人福祉 시책을 크게 ① 재가보호 ② 지역사회보호 ③ 시설보호 ④ 주거보호로 구분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가. 재가 보호

고령화 사회로 인한 가족 구조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재가 보호서비스 대상자가 급증 하고 있다. 노인의 재가 보호서비스 수요와 부양 부담 경감을 위하여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중저소득 생활 능력 상실자에 대해 재가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0년 재가 보호 서비스 대상 노인은 1만4천7백여 명으로 재가 보호 서비스 보조금은 중저소득 와병 노인에 한해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 가정에서도 지역사회 보호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2004년부터는 극히 심한 생활 능력 상실자에 지급하는 보조금 기준을 추가하여 지급하고 있는데, 재가보호 서비스 관련 보조금 기준은 다음과 같다.

- ① 경도 생활능력 상실자 : 재가 서비스 대상 노인에게는 월 최대 8시간의 서비스 비용을 전액 보조해 주며, 19-20시간 재가 서비스 비용에 대해 50%를 보조한다.
- ② 중증도 생활능력 상실자 : 재가 서비스 대상 노인에게 월 최대 16시간의 서비스 비용을 전액 보조해 주고, 17-36시간 재가 서비스 비용에 대해 50%를 보조한다.
- ③ 극중도 생활능력 상실자 : 재가 보호 대상 노인에게 월 최대 32시간의 재가 서비스 지용은 전액 보조해 주고, 33-72시간 서비스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50%를 보조한다.

1998년에는 “재가보호서비스 실시 방안, 추진계획과 교육훈련 강화”에 대해 구체적인 방법을 공포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가보호 서비스 지정 센터 개설과 아울러 재가보호 서비스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여 재가보호 서비스의 인력 자원 관리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나아가 서비스 거점의 조정 및 자문을 강화하여 효율적으로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2010년 1백66개소의 거점을 구축하여 1만7천여 명의 대상 재가노인에게 1백36만4천5백여 횟수의 서비스를 제공을 받았으며, 2천7백여 명의 재가보호 서비스 복지사와 3백32여 명의 재가보호 서비스 지도원에게 일자리 마련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결과를 가져왔다. 재가노인 보호 서비스 제공자는 크게 재가복지사와 가정방문간호사로 구분되며, 이들의 전문적 지식개발을 위함은 물론 심리·정신적으로 안정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직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1997년 제정한 『老人保護憲章』근거로 2002년에는 노인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중점적으로 독거노인에 대한 서비스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있는데, 2010년 독거노인 수는 5만7천여 명으로 그 중 소득, 건강에 따른 무연고 독거노인은 1만3천5백여 명에 이르고 있어 이들에 대한 재가老人福祉 사업을 구체적으로 실시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 내에 긴급구조대를 설치하여 신속, 정확하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② 재가 복지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 자원관리에 대한 단일창구를 설치하여 지역사회 내의 종교 기관 사회단체 등의 인력을 체계적으로 활용한다.
- ③ 긴급 의료보호 시스템을 강화하여 독거노인과의 안전망을 구축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경찰서, 소방서, 생명의 전화와 연락망을 구축 생명안전에 만전을 기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는 실종 노인 찾기 센터 안전망을 구축하여 예방, 찾기, 보호에 최선을 다한다.

나. 지역사회 보호

臺灣은 1990년대부터 널리 퍼진 “Aging in Place” 즉 주거환경을 개선해 노인들이 장기간 살아 온 지역사회 내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채택해 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시설 보호는 감소하고 시설보호 또한 지자체 보호, 재가보호 등 새로운 유형의 요양서비스 형태, 예를 들면 요양주택, 치매센타, 가정보모 서비스, 재택건강회복 서비스, 공동생활가정 등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으며, 시설보호의 형태도 多元化·多樣化를 꾀하고 있다.

1) 가정방문 서비스

가정방문 서비스의 주체는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은 비영리 법인이나 병원, 종교단체 등이 보조금으로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2010년 126개소에 TWD 5억7천여 원, 서비스 인력은 臺灣 사회에서는 특히 3D 업종이라고 하지만 무려 27,190여 명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臺灣전문장기보호협회에 따르면, 2005년 재가보호 가정은 병원 부설형 380개소, 일반형 105개소, 총 485개소에서 매월 2회씩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방문횟수는 485,722여 회로 병(의)원 부설형이 76.2%을 차지하고 있으며, 운영비는 국고 보조금으로 전액 충당하고 있다.

이 밖에도 지역사회 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에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들에게 무료로 중식을 제공 老人福祉 증진과 더불어 사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영양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영양급식 추진은 결식 우려 노인문제 해소에 중점적 추진하고 있지만 체계적인 급식 지원과 급식의 질 향상 도모로 영양결핍 문제로 인한 노인건강 보호를 위하여 2010년 지원 예산은 1인 1끼 TWD 100원이며, 급식 자원봉사자에게는 1일 교통비 TWD 200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식사 배달이나 밀반찬 배달 사업 그리고 일정한 장소에서 단체로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 민간 사회단체에 사무실 임대 및 취사장 설비 및 별도의 운영비를 지원해 준 결과, 2010년 1만 8천여 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2) 주·단기보호

晝間保護(Day Care)사업은 최근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른 인구의 고령화, 핵가족화, 가족 해체의 증가, 여성의 사회경제활동 참여증가, 복지수요의 증대와 다양화 등으로 인하여 가정의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노인들을 낮 시간 동안 일시보호하고 필요한 각종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치매 및 심신허약 노인의 심신 기능유지 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경제적·정신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자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다.

주간보호 센터는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주요 프로그램 내용은 상담사업, 일생생활 보호사업, 위생지원사업, 재활 및 치료 서비스, 심리사회 프로그램, 특별 행사 등이 있으며, 2010년 16개소에 정원은 358명에 이르고 있다.

단기보호는 자원은 보건소가 제공하며, 이용자 범위는 지자체에서 결정한다. 경중증 치매 환자는 월 14일, 중증은 21일이 표준이며 년 4회, 보조금은 1인 1일 TWD 1,000원으로 초가액은 전액 자부담이다.

2) 공동생활가정 보호

지역사회내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에 공동 가정을 설립, 자신의 집이 아닌 공동가정에서 체계적인 건강증진활동에 참여하고 동료 노인 또는 사회복지사 등과 함께 점심도 나누고 일상적인 교류 활동을 돋는다. 이 밖에도 이용 노인들의 가정 방문이나 안부 등을 묻는 정서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2010년 923 여 개소의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이 있다.

다. 시설보호

최근 들어 노인인구가 크게 증가하는데 이러한 현상은 사회구조 및 제도 가치관의 급격한 변화와 결부되어 다양한 노인문제를 야기하며 노인의 욕구를 중대시키고 있다. 특히 가족이 없는 무의탁 노인의 증가와 더불어 부모 자녀간의 갈등의 해결, 예방을 위하여 상호 별거를 지향하는 경향이 나타나며 또한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가족원 수의 감소, 노화에 따른 만성적 질환으로 인한 장애, 거동불편, 치매 등으로 노인을 가정 내에서 간호, 보호하기 어렵게 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그렇지만 생활보호 노인들의 문제나 욕구의 해결을 주로 노인생활 보호시설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지역사회 내의 재가노인들을 포함한 유료老人福祉시설이 증가추세에 있다. 2002년 老人福祉法의 개정으로 민간기업이나 개인에게도 시설 운영권을 주고 있어老人福祉생활시설 및 노인주택의 운영설치에 관심이 고려되고 있다.

老人福祉생활시설은 老人福祉法 제9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시설의 수요를 조사하고 또 한 민간에게 다음과 같은 유형의 老人福祉시설을 설립하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 ① 장기요양시설 : 만성질환 노인을 간호 · 진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② 요양시설 :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곤란한 노인을 돌보고 전문적 간호가 필요하지 아니한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
- ③ 보호시설 : 유료보호를 받는 노인이나 부양의무가 있는 가족이 없고, 또한 부양의무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가족의 노인을 보호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④ 문화건강시설 : 노인을 위한 휴양, 건강, 문예, 기예, 연수 및 문화활동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이용시설.
- ⑤ 재가시설 : 노인을 위한 주간보호, 일시보호, 취업정보, 지원서비스, 재택서비스, 음식서비스, 단기보호, 퇴직준비 서비스, 법률자문 서비스 등의 종합적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老人福祉시설은 최초로 1943년 9월에 공고한 사회구제법에 의거 초창기에는 대부분 구제원으로 출발했으나 1968년부터는 仁愛之家 그리고 1980년 때부터는 공사립으로 구분되어 운영되기 시작했다.

최초의 시설은 1946년 3월 臺灣성에서 건립한 『인애의 집』이며, 2010년 老人福祉시설은 “양로시설”, “보호시설”, “장기보호시설” 1,002개소(정원 50,481명), “요양원(너싱홈)” 321 개소(정원 22,733명)로 총 1,323개소(정원 73,214명)이며, 그리고 退役軍人指導委員會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민의 집” 18개소(11,006명)도 있는데, 생활시설의 년 평균 입소율은 72%에 불과하며, 시설규모는 83.5%가 정원 20-30명의 시설이다.

이 밖에도 1997년 老人福祉法의 개정으로 인하여 자자체는 물론 민간인의 참여로 매년 유료 老人福祉시설이 우후죽순처럼 설립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체적 정신상의 각기 다른 복합적 병세를 지닌 만성 노인질환자들이 한 시설 내에서 혼합 수용했던 과거의 운영방식을 탈피하여 시설 입소와 퇴소 및 절차에 복잡성 해소, 시설 피수용자의 보호 기준 향상, 종사자들의 근무요건 완화, 지역사회와 시설의 협조 체계 및 역할 분담 등이 원활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시설보호 서비스 기능 향상, 종사자의 전문적 기술 향상으로 보호자가 마음 편하게 시설에 위탁할 수 있음은 물론 수혜 노인이 시설에서 인간다운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보호시설은 3년마다 종합 평가를 받아가며 평가의 결과에 따라 우수 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함은 물론 그 결과를 중앙의 내정부 인터넷에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공·사립 노인생활복지 시설의 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매년 정부와 복지시설간의 상호 교류로 전문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시설에 대한 평가 및 검토 등의 문제에 대해 연구 토론하여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시설로 운영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미신고 시설이 급증함에 따라 노인 보호의 안정성과 서비스의 질에 대한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다. 老人福祉法 제28조는 「법적허가 신청없이 老人福祉 시설을 설립, 운영할 시에는 책임자에게 TWD 3만원 이상, TWD 5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

러나 정한 기간 내에 설립처 신청 및 법인 등록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규정 기간이 초과하여 처리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과중 벌금에 처한다. 또한 시설 명칭을 공개하고 정지시킨다.」로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시책은 노인인권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시설 환경에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 있으며 이는 요보호 대상 노인의 시설보호는 정부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미신고 시설은 대부분 농어촌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2005년에는 100% 정리되었지만,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 홍보 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결과적으로 臺灣의 노인 시설복지는 시설의 과잉 공급으로 인한 서비스상의 혼선이 야기되고 있어 노인 복지의 행정체계와 각종 법규의 통폐합을 老人福祉계로부터 요구받고 있다. 아울러 전문인력의 심각한 부족 현상이 초래되고 있어 서비스의 품질 및 시설관리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시설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하며, 하루 빨리 老人長期요양보협제도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라. 주거 보호

臺灣에서는 급변하는 고령화 사회와 국내 노인 거주 주택수요의 다양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민간인도 공공건설추진위원회 참여케 했다. 노인 주거용 주택 업에 참여할 수 있는 <민간인의 노인주택건설참여추진방안>을 2004년 5월에 채택하여 건설업과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노인으로 하여금 주거보호에 대한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게 하여 노인주택의 증가에 따라 정부의 재정부담을 경감시키고 민간투자를 촉진하여 경제발전을 선도하고 있다.



또한 저출산 ·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노인 주거산업을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건설촉진법 제3조에는 노인주거특별조치, 노인주거시설 기본 설비, 노인주거 종합관리요령 등을 법령에 추가하여 「노인주택건설」을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아울러 노인주택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개보수해 문화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는데, 주택보수는 화장실, 욕조, 부엌, 배수구 등을 포함 침구 등이며 1인 최고 TWD 10만원을 지원하며 3년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노인주거시설에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농림부와 협력하여 「농업용지 사용 변경 및 심사」, 「사회복지시설의 비도시 토지 사용」등의 제도를 완화하고, 65세 이상 노인과 동거하고 있는 자녀에게는 소득세 50%를 감면해 주며, 3대가 동거할 경우에는 국민주택 입주 우선권을 부여한다. 또한 3대가 동거하는 가족이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1999년부터 세대당 TWD 30만원까지 무이자 대출을 해 주어 주택구입의 기회를 제공해 주어 노부모와 함께 동거할 수 있는 부양책을 강구하고 있다.

특히 노인주택건설의 발전 목표는 (1) 시설 설비의 표준화, (2) 생활 기능의 편리화, (3) 서비스 기능의 인성화, (4) 경영 관리의 산업화 등의 대책을 수립하여 민간인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으며, 건축에 필요한 경비는 최저리 융자를 해 주어 조세감면과 저금리로 투자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있다. 그 결과 증가하고 있는 노인 주택의 수요에 대응하고, 정부의 재정 부담을 경감시켜 민간투자를 유치하여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마. 기타 시책

1) 실버산업

급속한 고령화는 국가 재정 악화, 경제 저성장과 같이 위협요인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기회요인이기도 하기 때문에 급팽창하고 있는 노인인구의 신규 거대 수요를 실버산업으로 연결하여 국가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관련 법률제정은 없지만 老人福祉추진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실버산업 활성화 추진전략으로는 이미 1988년부터 고용창출과 선진국 고령소비자의 소비패턴을 고려하여 유망 실버산업 용품을 중소기업 적합 산업으로 선정, 각종 지원을 하고 있어 노인 장애자용 재가노인 요양서비스 용품 생산능력은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산업분야별로 국제경쟁력 강화, 시장매력도, 공공성 기준으로 요양산업, 보건 의료기기산업, 전략품목으로 선정하여 고령자 수요에 맞는 상품 및 서비스 공급과 안전표준규격 재정 등을 포함, 요양 서비스, 의료서비스, 금융, 여가, 주택, 식품, 교육 등에 대한 연구, 개발, 제조, 가공, 제공, 유통, 또는 판매에 대한 전략을 세워나가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재가요양서비스 중심으로 하는 고령자용 주택 개조, 실비, 고령자용 임대주택, 국민주택 우선분야 등 주택산업분야에 주력하여 노인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臺灣에서는 실버산업의 용어를 老人銀髮產業으로 표기하고 있으며 동 산업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老人福祉 산업 개발 수행 및 연구」, 「고령자 주거생활 및 설계모형 연구」, 「노인주거 생활부조 공급과 수요 연구」 등을 연구·개발 하였고, 또한 민간기업과 협력하여 「노인주거 생활지침」을 개발하여 노인·보호자·학계·산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2) 老人福祉추진위원회 운영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老人福祉추진위원회 규정”을 제정하고 위원회를 내정부내에 두어 고령 사회 정책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특별 기구로 1980년에 출범했다.

동 위원회의 설치는 老人福祉法 제5조에 근거한 것이며, 주요 사업 내용은 老人福祉 관련 협력, 연구, 심의, 자문 및 老人福祉 추진 등이다. 위원회의 구성 인원은 위원장과 老人福祉 시설 대표 6명, 전문가 8명, 민간단체 대표 7명 등 22명으로 구성하여, 분기별로 정기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2003년에는 위원회의 운영 기능과 방침, 노인보호정책 및 노인주거정책, 老人福祉시설과 지역사회와의 역할, 미인가 老人福祉시설의 현실화 추진, 중하위층 노인특별 보조금 등의 老人福祉政策의 기틀을 마련기도했다. 또한 최근에는 별도의 정년·연령차별 제도를 개선하여 노령연금 대폭 확대 방안, 3세대 동거 가족 특별 우대 정책 등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다.

그리고 중앙 정부 산하의 지방자치단체에도 老人福利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사회 환경에 부합한 老人福祉사업을 기획하고 협조 연구, 심의, 자문 및 관련 老人福祉 사업을 추진하여 경로효친 사상을 배양하고 노인들의 생활 안정과 아울러 노인권익 신장에 기여하고 있다.

동 위원회는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老人福祉政策 수립 의무를 명시하고 구체적으로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가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책방향 및 계획 수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V. 결 론

臺灣도 저출산·고령화 속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老人福祉에 관한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핵가족화 산업화의 외적 환경 변화로 인하여 노인보호 관련문제는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더불어 각계각층의 큰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결과 중앙정부에서는 최근 적극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방안, 생활보호 서비스 및 산업발전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민간자원을 결합하여老人福祉 서비스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재가서비스와 가족의 지지, 생활시설 보호 확충, 간호·의료·복지 서비스의 통합관리, 지역사회 노인보호 서비스 및 사회참여 등의 조치를 마련함으로서 노인의 경제생활 보장, 심신 건강유지, 삶의 질 향상, 보호 전문인력 확보, 주거 서비스 등의 개선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즉, 인구 고령화로 인한老人福祉의 중요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인보호 서비스 방안을 수시로 개정하고 노인들의 생활, 건강, 소득, 사회 참여 등 복지서비스를 추진하면서 사회적 배경, 세계적 조류에 부합되는 노인의 건강과 존엄성이 인정되는 사회, 삶의 질적 향상을 기여하기 위한老人福祉政策을 구축함으로서 인간 행복추구권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결과적으로臺灣은 사회보장의 확대·공적 부조의 지원 확충·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확립, 그리고 균형있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정부와 국민이 공동 노력으로臺灣형老人福祉 서비스 모델을 창출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중에서도老人福祉의 특징을 보면, 사회발전과 기충건설·생산적 복지·정신윤리를 위한 정부의 일관성 있는均富社會建設의 추구·老人福祉비 지출의 증액·老人福祉 서비스 수혜대상 확대·老人福祉 수준의 질적 향상을 위한 중점적인 사업을 추진하면서臺灣형老人福祉 서비스 제도를 수립해 나가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老人福祉 서비스는 중국 전통사회의 미덕인 미풍양속과 상부상조정신에서 발전한 것이며, 정부의 적극적인老人福祉제도의 수립과 아울러 국민들의 잠재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인데, 최근에는 지역복지의 중시하여 효율적인복지서비스 체계의 건립과 전통적인 미풍양속의 유지·발전·계승와 더불어 각국의 사회복지의 경험을 통한

중국식의 독창적인 老人福祉서비스 정책 모델을 개발해 나가고 있다.

가족구조의 기능을 강화하여 노인으로 하여금 최대한으로 노인이 가정내에서 행복을 누리도록 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정부에서는 고령화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제반 노인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나아가 모든 노인들을 심리적·사회적·신체적 면에서 까지 보호하기 위하여 가정(정신적·물질적 효도), 지역사회(서비스적 경로), 사회(제도적·서비스적인 경로), 국가(제도적 양로)가 상호보완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臺灣의 老人福祉서비스 정책 체계는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 대한 公的扶助(Public Assistance)에서부터 출발하여 전체 노인들을 위한 老人福祉 체계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점과 아울러 老人福祉를 위한 각종 사업을 정부와 민간으로 하여금 공동 노력으로 추진하고 있는 점에 특색이 있다. 현재 臺灣은 경제적 번영과 사회발전으로 인하여 야기되고 있는 노인문제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 당국과 정책 입안자들이 특별히 이를 중시하고 있어 앞으로 지속적인 老人福祉 서비스 정책이 확충되고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문헌

- 林春植 (2003), “高齡化 社會的 老人人力活用政策 研究”, 老人福祉研究 通卷 22號, 韓國老人福祉學會
- 林春植 (2005), “臺灣的老人福祉政策”, 世界的老人福祉政策, SEOUL: 學現社.
- 日本社會福祉協議會(2008), 第13回 韓國 臺灣 日本 民間社會福祉 代表者 會議 資料集”
- 吳玉琴(2009), 臺灣長期照護制度的現況與問題, 中華民國老人福祉推動聯盟
- 林萬億(2009), 臺灣的 社會福祉, 臺北: 五南
- 林萬億(2006), 臺灣的 福祉國家, 臺北: 巨流圖書公司
- 中華民國內政府(2012). 老人福祉法規. 編
- 中華民國內政府(2012). 中華民國 2008年 社政年報
- 中華民國內政府(2010). 長期照護保險規劃構通座談會資料
- 中華民國 臺北市政府社會局(2012). 臺北市老人福祉簡介

- 中華民國 行政院國家科學委員會(2009), 高齡社會來臨：為2025年的臺灣社會規劃之整合研究(2006-2008)
- 中華民國 行政院衛生署(2009), 長期照護保險規劃初步成果,
- 陳燕禎(2008), 老人福祉-理論與實務, 臺北：雙葉書廊有限公司
- Choon Seek, Rim(2004), “Are, Dimensions and Episoder of Governmental Policy Impacts on the Retirement Live in America,,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Vol 11, Korea Society of Welfare for the Aged
- Choon Seek, Rim(2004), “Current International Issues and Future Vision of Career Development and Job Searching for the Elderly”,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Vol. 10, Korea Society of Welfare for the Aged
- Directorate General of Budget, Accounting and statistics, Executive(2003). Yearbook of labor Statistics, R.O.C.
- Li, R. M. & Lin, H.S. (2000). Factors in elderly transfers of property to children in Taiwan, Comparative study of the elderly in Asia. No. 92-17 Population Studies Center, Univ. of Michigan
- Taiwan Provincial Institute of Family Planning (2007). Unpublished paper on demographic data.
- The Republic of China(2005), Introduction of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by Ministry of Interior
- U.N. (2004). Demographic yearbook,
- Ministry of the Interior(2008), An Outline of Interior Affairs, Republic of China.
- Published by Ministry of the Interior(2008), Introduction of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by Ministry of the Interior, Republic of China.
- <http://www.moi.gov.tw>